

물품매각계약 특수조건

1. 계약자는 물품 인수 시 공단감독의 입회하에 지정한 장소(공인계량소)에서 계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계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후정산은 계약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입찰공고 시 품목별 단가에 적용하여 kg당 기준단가를 결정하며, 품목별로 실측한 중량이 입찰공고 시 중량에 미달한 경우 초과납부된 계약금액을 환급하며, 초과 시에는 초과분 물량의 계량이 끝난 시점에서 초과금을 납부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물품인수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자는 대상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전량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매각물건을 누락 또는 무단 투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된 계약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5. 계약자는 가로등주 인수 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1m 길이로 절단하는 등)로 반출하여야 하며, 발생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매수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기한 내에 물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후에 발생되는 물품의 손·망실, 사고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임의로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물품의 인수에 따른 상·하차비, 계근 수수료, 해체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운송비, 물품 약적장 뒷정리 등 모든 제비용을 부담한다.